

(사)한국연극협회 선거관리규정

2000. 11. 11 개정
2005. 01. 08 개정
2012. 12. 24 일부개정
2015. 11. 28 일부개정
2018. 12. 05 일부개정
2021. 12. 25 일부개정
2025. 07. 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연극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 11조에 규정된 임원 선거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아울러 본 규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임원선거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협회 임원의 선출은 정관이 정하는 이외에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구성) 본 협회이사회는 본 협회원 10인 이내를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한다. 아울러 후보등록 후 각 후보자 측에서 추천하는 자를 1인씩 포함한다. 이 경우, 이를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시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시행세칙을 본 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이 만들 수 있다.

제5조(후보등록)

- ① 이사장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본 협회 사무국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해야 한다. 후보등록마감은 선거일 1개월 전으로 하고, 최소한 등록마감 20일 전까지는 각 지회, 지부에 우편으로, 그리고 월간 한국연극지 및 본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후보등록구비서류는 후보등록서(소정양식), 후보추천서(소정양식),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6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마감일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제7조(대의원) ① 각 지회장은 정관에 규정된 대의원 명단을 정해진 날까지 선거관리위원

회에 등록해야하며, 만약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하여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② 대의원 명단은 대의원 등록 마감 다음 날 공개한다.

③ 회비(총회개최 전년도 분까지)를 미납하거나 징계중인 자, 임원개선총회 개최 전년도 8월 말일 이후 입회승인을 받은 자는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총회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④ 본 협회정관 제12조에 의거, 대의원등록 마감 후 새로이 선출된 본 협회의 직능별 추천이사와 당연직이사를 제외하곤 등록된 대의원은 등록을 변경할 수 없다.

⑤ 본 협회정관 제19조 2항에 의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총회에서 정하여 선출하되 임원 및 산하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지명한 단원을 우선 배정토록 한다.

제8조 (의무)

① 후보자와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과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경고,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이사장 후보 등록시에는 선거 공탁금 15,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금액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내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수당 및 회의비와 홍보물을 인쇄비 및 우편 통신비를 포함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임원 선거사무에 사용하고 잔액 발생시에는 본 협회 사무국 운영비로 편입한다. [2025.07.06. 일부개정]

부 칙 (2000. 11. 11.)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1. 08.)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4)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8)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05)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5)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07. 06)

1. (시행일) 본 규정은 본 협회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